

December 31, 2024

2024년 세법 개정법률 주요내용

I. 2024년 세법 개정법률 공포

정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2024.12.10.)한 12개 세법 개정법률을 국무회의(2024.12.24.)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12월 31일 공포하였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이 확대되고, R&D와 통합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등 기업들의 투자·고용 촉진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2년 유예 등은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부 세법개정안 중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ISA 세제지원 확대,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선 등에 대한 개정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제 또는 현행유지됨에 따라 당초 세법개정안의 정책 기대효과보다는 그 영향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안은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별도의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2024년 12월 31일 공포된 **2024년 세법 개정법률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정리하여 기업 고객 및 담당자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세법개정안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합의를 이루었으나 개정되지 못한 법률안에 대한 향후 국회 재논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4.12.10.) 주요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뉴스-보도·참고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I. 2024년 세법 개정법률 주요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조특법 제6조]
 -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한 3년 연장(~2027.12.31.)하고, 고용증가 시 적용하는 감면을 인상(고용증가율의 50% → 100%), 연간 감면 한도 설정(연간 5억원)

-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감면을 인하(종전) 일반 50%, 청년·생계형 100% → (개정) 일반 25%, 청년·생계형 75%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3년 연장(~2027.12.31.) [조특법 제10조, 제24조]
- 일반 R&D 세액공제의 공제율 점감구조를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까지 확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에도 도입[조특법 제10조]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027.12.31.) [조특법 제16조의2]
- 성과보상기금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가입기간 요건을 완화(5년 이상 → 3년 이상) [조특법 제19조]
-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당해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공제율 상향[조특법 제24조]
 - (종전) 국가전략기술 4%,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3% → (개정) 10%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제47조]
-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제71조의2]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법인대표자 공제기준 완화[조특법 제86조의3]
-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2027.12.31.까지 매입분) [조특법 제91조의23]
- 혼인신고 시 부부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 적용[조특법 제95조]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025.12.31.) [조특법 제96조의3]
-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2029.12.31.) 및 재설계[조특법 제104조의10]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지원제도 적용기한 3년 연장(~2027.12.31.) [조특법 제104조의24, 제118조의2]
- 건설기계 처분시 발생하는 처분소득에 대해 다른 건설기계의 대체취득을 조건으로 처분이익 분할 과세 특례 신설[조특법 제104조의34]
- 면세점 송객용역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조특법 제106조의11 등]
- 친환경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2026.12.31.) 및 재설계(하이브리드차

감면한도 100만원 → 70만원으로 조정)[조특법 제109조]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배제[조특법 제146조]

2. 소득세법

- 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기업의 비용 인정)[소득세법 제12조]
-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소득세법 제12조, 제20조]
 -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자사·계열사 제품 및 서비스의 할인혜택을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 조각투자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펀드과세와 동일하게 이익(환매·매도, 해지, 해산 포함)을 배당소득으로 과세[소득세법 제17조]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소득세법 제2장의2 등]
-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 2년 유예(2025년 → 2027년) [소득세법 제37조]
- 가상자산 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 의제 허용(별도 부대비용은 불인정) [소득세법 제37조]
-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 확대[소득세법 제59조의2]
- 국채등에 투자한 해외투자기구에게 이자소득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하는 대상에 국외사모펀드 추가[소득세법 제119조의3, 법인세법 제93조의3]
-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소득세법 제150조]
 - (근로자)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2027.12.31.), 세액공제율 조정(소득세액의 5% → 3%) 및 조합 교부금 조정(납부세액의 2~10% → 1~10%)
 - (사업자)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및 교부금 폐지

3. 법인세법

-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더라도 적격분할로 보도록 요건 합리화[법인세법 제46조]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최저세율(현행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을 19%로 조정[법인세법 제55조]

-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관련 규정 작용 방식 합리화[법인세법 제76조의22]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소득세법 제160조의3, 법인세법 제112조의2]
 -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액이 일정 금액(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4.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 포탈 우려가 있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부가가치세법 제57조의2]
-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2027.12.31.)[부가가치세법 제47조, 제63조 등]

5. 관세법 등

- 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 신설[관세법 제9조, 제38조의5]
 - 성실납부 관행 정착 등을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수입업자가 월별로 관세사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확정납세신고하는 제도 신설
- 관세 수입 무신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7년) 신설[관세법 제21조]
- 관세법령상 부정행위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상향(40% → 60%)[관세법 제42조]
- 원산지 등 사전심사 제도 개선[FTA관세법]
 - 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심사 신청을 허용하고 사전심사 대상에 실행 관세율을 추가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 합리화[국조법]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추가(소송·상호합의 등의 결과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신탁명세서로 해외금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내국법인)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완화
- 국외거래 경정기한 연장(기존 2개월 → 6개월) 등[국조법 제6조]
- 국가 과세관청 간 교환되는 금융정보 범위에 암호화자산 거래 내역 포함[국조법 제36조]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국조법 제61조, 제62조 등]

- 그룹 및 구성기업 정의 명확화
- 고정사업장 정의 명확화
- 부분소유중간모기업 명칭 및 정의 명확화
- 연결매출액 산출방법 위임근거 마련
-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미납 이연법인세부채 차감금액 계산방법 위임근거 마련
- 조정대상조세 계산 관련 결손취급 특례 신설
-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구성기업별 배분방법 보완
- 최소적용제외 특례의 예외 신설
- 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 대상기업 확대 등
- 투시고세기업 지분소유자 기준 위임근거 마련
-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중 과세분배방식 적용 시 분배의 범위 명확화
- 전환기 적용면제의 공동기업 등에 대한 적용방법 보완
- 일반적 적용면제 등 추가 신설
- 신고기한 특례 신설

7. 국세기본법

-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납부세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금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국세기본법 제81조의7]
 -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확대(조사 15일 전 → 20일 전)
 - 세무조사 불복 청구에 따라 재조사 결정통지 하는 경우 재조사 사전통지기간 축소(조사 15일 전 → 7일 전)

관련 구성원

심규찬

변호사

T 02.3404.0679

E gyuchan.shim@bkl.co.kr

주성준

변호사

T 02.3404.6517

E seongjun.joo@bkl.co.kr

김동현

공인회계사

T 02.3404.0572

E donghyun.kim@bkl.co.kr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